

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 유 진[†]

김 민 지[‡]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강간 무고, 성별,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액수, 처벌판단, 책임 판단

* 본 연구는 김유진(2021)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제 1저자: 김유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심리학 석사

‡ 교신저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E-mail: mkim76@sookmyung.ac.kr

2018년에 촉발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피해가 가시화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우려 또한 확산하였다. 2017~2018년 대검찰청이 처리한 무고 사건 중, 성폭력 무고 단일범 인원수가 2017년 536명에서 2018년 654명으로 증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무고 혐의를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라는 점은 이를 암시한다(윤덕경, 김정혜, 천재영, 김영미, 2019).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지되는 경우가 나타나 2018년 5월, 대검찰청은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 수사를 중단도록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최근 들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이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인식 개선에 지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가 꼽힌다(강경화, 2012).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대가를 바라고 거래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이는 곧 피해자의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 또한 많을 것이라는 통념으로 이어진다(허민숙, 2016). 이러한 통념은 피해자의 실제 피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꽃뱀’이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유발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따라서 형사합의의 요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과 반성, 피해보상이 아닌 금전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강간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성별화된 범죄로 알려져 있으나 남성 또한 피해를 겪을 수 있으며 여성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강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진 피고인의 성별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가 역전되는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판단자 성별은 강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이정원, 김혜숙, 2012),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간 통념과 남성 강간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의 성별과 마찬가지로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 취하 및 피해배상을 명목으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판단자와 피고인의 성별, 그리고 피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자 한다.

강간 무고

강간은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범죄이다. 김종구와 송봉규(2018)는 강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저항 정도나 형태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가 폐지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합의하에 한 성 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는 강간 무고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무고)에 의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라고 규정된 범죄이다. 그중, 강간 무고에 대하여 Kanin(1994)은 실제 강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고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윤덕경 등(2019)은 2017~2018년 대검찰청에서 처리한 강간 무고 사건 중, 2017년의 경우, 여성 피고인은 92%, 남성 피고인은 5.4%, 2018년의 경우, 여성 피고인은 90.4%, 남성 피고인은 6.6%로 성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Kanin(1994)은 강간 무고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동기로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이나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 형성, 타인의 관심 또는 동정심 유발을 들었다. 그러나 De Zutter와 Horselenberg, van Koppen(2018)은 물질적 이익 편취나 상대방과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 대한 후회나 수치심 또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주된 동기는 금전적 이익과 같은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공상허언증(pseudologia fantastica)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무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Balasubramaniam & Park, 2003).

이처럼 강간 무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피해

자의 악의적인 허위신고 때문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간 무고 사건을 판단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실제로 피해를 당했으나 사건 당시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로 인한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Ministry of Justice, 2010). 그러나 허위진술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발생한 일을 사실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Spohn, White & Tellis, 2014).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작용할 경우,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진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고죄를 적용하려면 강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매우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간 무고 사건의 경우, 강간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가 역전된다는 특성상 무고 원사건인 강간 사건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 여부가 강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들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또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판단자의 성별

판단자의 성별은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법률 외적 요인으로, 특히 강간 사건 판단에서 성차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이예림, 박지선, 2021).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았고, 사건 당시 항거 불능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판단자가 평소 피해자의 행실 또는 당시 상황을 기반으로 피해자가 강간을 유발했다고 인식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권인숙, 이건정, 김선영, 2016).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강간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져 비난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 판단자보다 남성 판단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정찬영, 김현정, 김태경, 박상희, 2020). 이는 강간이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별화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으로(장다혜, 2012),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강간 사건 중,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7.9%, 여성이 2.1%였다. 반면,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1.9%, 여성이 97.6%로 가해자와 피해자 성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Maurer와 Robinson(2008)은 남성은 여성보다 피해 여성의 성적 의도를 더욱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남성 판단자가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해자에게 더욱 감정이입하고 동정심을 느끼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정찬영, 김현정, 김태경, 박상희, 2020). 반면, 여성 판단자의 경우, 여성이 높은 공감 능력과 포용력을 갖춘 존재여야 한다는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자신과 동

일시하여 가해자를 더욱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국가의 여성일수록 그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Ott-Holland, Huang, Ryan, Elizondo & Wadlington, 2014).

그러나 판단자의 성차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성별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거나, 오히려 여성의 피해자를 더욱 비난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등 그 결과가 혼재한다. 이에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외재 변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조은경, 박지선, 2020). 이에 황인정(2007)은 범죄에 대한 가치관이나 개인의 고유한 신념 체계인 고정관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중, 강간 사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다루어졌던 강간 통념은 판단자의 성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강간 통념은 강간과 강간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에 관한 과잉 일반화된 잘못된 신념이다(Turchik & Edwards, 2012).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피고인에게 판대한 처벌판단을 적용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강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Anderson & Anderson, 2008).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간 통념 수용도가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다(김보경, 김범준, 최종안, 2020).

한편, 강간이 여성의 문제라는 보편적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남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작게 평가된다(Chapleau, Oswald & Russell, 2008). 남성 피해자의 경우, 전형적인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성의 강간 피해를 둘러싼 왜곡된 인식인 남성 강간 통념(male rape myths)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Hancock, Policastro, Crittenden &

Garland, 2021). 이에 따르면, 남성은 성적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존재이므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통념이 존재한다(Huitema & Vanwesenbeeck,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강간 통념을 모두 수용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수용하는 정도가 더욱 높다고 하였다(Chapleau et al., 2008).

피고인의 성별

피고인의 성별은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Winters, Collins, Kaylor & Jeglic, 2020). 피고인의 성별이 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행 연구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관대한 처벌판단을 적용하거나 오히려 더욱 엄격한 처벌판단을 적용하거나 범죄 유형에 따라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 혼재된 결과가 존재한다(Bishop & Frazier, 1984; Goulette, Wooldredge, Frank & Travis, 2015; Ryon, 2013). 서은경(2015)은 과거에는 여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여성 또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성인지적 이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동안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온정주의/기사도 이론, 악녀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Lu, Liang & Liu, 2013).

온정주의/기사도 이론(paternalism/chivalry theory)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시 기사도 관점과 온정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기사도 관점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서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이다(Carroll, 1997). 따라서 여성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간생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온정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형사사법 체계는 남성을 우월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열등하고 무기력하며 책임감이 약한 존재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두 관점 모두 남성과 여성의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여성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Moulds(1978)는 온정주의적 관점이 심리적·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지닌 복잡한 개념이므로 기사도 관점보다 남성과 여성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반면, 악녀 이론(evil woman theory)에 따르면,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비난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Luke, 2008).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한 사회가 중요시하고 보호하는 가치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른 여성은 처벌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폭력과 범죄는 남성다움과 연관된 것이므로, 남성을 공격하거나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여성은 여성다움과 동떨어진 악한 존재로 여겨져 가혹한 처벌과 그러한 처벌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된다(Denno, 1994). 그러나 Daly와 Bordt(1995)는 온정주의/기사도 이론과 악녀 이론만으로는 형사사법 체계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이에

Steffensmeier, Ulmer과 Kramer(1998)은 피고인의 양형 편차를 법관이 초점을 두고 있는 주관적 관심과 목적에 기인한다고 보는 초점적 관심 이론(focal concern theory)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범죄의 심각성과 동기, 계획성,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뿐만 아니라 현재 교도소의 과밀 상태나 법원의 업무 부담, 언론 보도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고려하여 양형 판단을 한다고 하였다(박미랑, 2017).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자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확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에 관한 정보 또한 불충분하다. 따라서 법관은 양형 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며, 성별과 인종, 연령과 같은 피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화된 양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즉, 법관의 양형 판단에는 그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인지된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것이 양형의 격차로 이어진다(박미랑, 이민식, 2013; Albonetti, 1991).

형사합의

한국의 형사실무에서 형사합의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려왔는데, 김성돈(2008)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자발적인 화해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법관의 양형 판단에서 형벌의 감경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다혜(2013)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는 개인적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사망 시 피해자의 친족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사법기관에 내보이기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형사합의는 기소 여부 및 양형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기광도, 2015), 신속한 사건 해결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피고인의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 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 종용이나 협박, 폭력, 사건 종결 시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성이 크다는 점 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양립한다(하지환, 2016).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감정적 피해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유발한다. 이 경우, 피해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범죄피해 이전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원상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대체로 금전적인 배상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갈음하려 하므로 형사합의를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서의 형사합의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장다혜, 2013). 여기에는 강간 고소와 합의금이 결부된 인과관계에 관한 통념이 영향을 미친다. 김예람(2008)은 성폭력 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의 욕구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더욱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합의 금액이 높을수록 그러한 인식은 강해진다. 한국 사회에는 성을 신성시하여 함부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가치로 여기는 전통적·보수적 인식이 존재한다(신선미, 정태연, 2005). 성에 관한 남성중심적·성차별적 규범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규범은 엄격한 성 역할 사회화가 요구되는 여성에 대한 가치판단적 평가로 이어지며, 이

는 여성에게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이종인, 2007). 따라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순결을 잃은 존재로서 남성 피해자보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질 것이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장다혜(2012)는 피해자의 합의 고려 요소에는 피해회복 외에도 피해에 대한 낙인 가능성과 가족이나 주변인이 받게 될 충격과 비탄에 대한 우려, 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동정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형사소송절차 참여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진지한 사과와 반성으로(장다혜, 2013), 이는 피해회복의 전제이다. 금전적 손해배상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제안하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처럼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에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반성, 처벌, 회복피해 등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통상적인 액수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장다혜, 2013). 특히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꽃뱀’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꽃뱀’이 전통적·이상적 여성상과 거리가 먼 여성성을 유형화하는 표현으로서 남성을 성적 관계로 유혹한 후 금품을 편취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여성혐오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이수연, 윤지소, 장혜경, 김수아, 2018), 피해 여성의 형사합의 요구 행위는 무고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2014)은 피해자의 합의 경험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면 피

해자 진술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강경화(2012)와 정은경(2017)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돈(형사합의금)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통념이 존재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 자체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무고 협의를 적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념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나타난다.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간한 ‘범죄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중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강간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8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강간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공고하게 자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 무고 사건에 대한 인식

강간 사건의 경우, 수사가 사건 당시의 정황 증거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해자의 협의없음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협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에서 협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협의유무를 판단할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허위 고소 또는 허위진술이 아닌 입증의 어려움으로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심이 무고 협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덕경 등(2019)은 2017~2018년 검찰에서 처리한 성폭력 무고 사건 중 원사건이

간음/강간/강제추행인 경우가 8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은 71.3%에 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피해를 겪었음에도 무고 혐의가 적용된 사례 또한 포함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은정(2019)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폭행과 협박을 강간죄 성립의 전제로 판단하는 한국의 법령체계 상,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의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므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염려와 대다수의 강간 피해 신고가 허위신고이거나 다른 범죄보다 성폭력 범죄에서 무고 비율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믿음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물론 어떠한 목적으로 실제 무고한 경우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자신이 피해를 겪었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강간 무고 사건에서 무고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윤덕경 등, 2019). 이에 허민숙(2018)은 성폭력 피해 및 피해자 전형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엄격한 제재,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 무고의 심각성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허민숙, 2016). Saunders(2012)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또한 강간 피해자, 특히 여성을 강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강간 무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보편적인 믿음과 함께 ‘진짜’ 강간과 ‘진짜’ 피해자에 관한 통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에 Bryden과

Lengnick(1997)은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경우, 불쾌감과 수치심을 피하기 힘든 수사·재판 과정과 가해 남성과 변호인의 비난, 위증죄 또는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쓴 상태에서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는 인간의 특성상 강간 무고를 저질렀다고 예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강간 무고에 관한 체계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증적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윤덕경 등(2019)은 수사기관이 원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국내에서 이루어진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질적 연구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성폭력 사건이 무고죄로 전환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였다(강경화, 2012; 장다혜, 2012; 정은경, 2017; 허민숙, 2018). 이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합의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며,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중, 강문봉(2017)은 강간 통념과 성 역할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성별과 나이, 학력, 직업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 또한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판단자의 성별이나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처벌판단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2017~2018년 대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 중 피고인 성별은 남성이 6.1%, 여성이 91.1%로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강간 무고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역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

단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에 따라 피고인의 무고 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피고인의 무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간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을 때 피해자가 제시했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자 한다.

연구 가설

형사소송실무 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형사합의는 실체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공식적 관행으로,加害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피해회복을 통한 자발적인 사적 분쟁 해결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서의 형사합의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며, 무고 가능성을 높이 판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강간 고소와 합의금이 결부된 인과관계에 관한 통념, 즉, ‘강간 피해자는 돈(형사합의금)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통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간 무고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사합의와 관련한 통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그중, 판단자의 성별은 강간 사건 판단에서 성차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강간 피해자의 성별이 처벌판단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가 전환되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또한 피고인 성별에 따라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형사합의와 관련한 통념이 실제로 하는지, 실제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형사합의 여부나 형사합의금 액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기준제도에서는 성폭력 범죄에서 ‘상당부분 공탁’을 긍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형사합의의 대부분은 형사합의금 산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에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반성, 처벌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판단자들이 강간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아 무고 가능성을 크게 판단할 것인지, 판단자의 주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무고 가능성을 크게 판단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판단자 성별이나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 알아보기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유무죄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피고인이 제시한 형사합의금의 액수에 따라 유무죄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무고 피고인이 제시한 형사합의금의 액수는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즉,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한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

보다 피고인의 유죄일 확률이 높고,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며, 더 긴 양형을 부과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업체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총 4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읽은 후 시나리오의 내용을 묻는 3개의 문항을 삽입하여 이를 모두 맞힌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만 본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구 참가자가 올바르게 응답하여 제외된 연구 참가자는 없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39.14세 ($SD=10.902$, 범위: 만 20세~59세)였으며, 남성 참가자는 203명(50%)이었고, 여성 참가자는 203명(50%)이었다.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강간 피해자(무고 피고인)가 제시한 형사합의금 액수가 거액(8천만 원)인 경우, 소액(2백만 원)을 제시한 경우, 그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제시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범죄 발생 경위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합의금이 책정되므로, 명확한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대략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약 1000만~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앙일보, 2018).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금액(거액)과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소액)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2(연구 참가자 성별: 남성/여성)X2(피고인 성별: 남성/여성)X3(피고인이 제시한 형사합의금 액수: 거액/소액/미제시) 피험자 간 요인설계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5월 11일~5월 14일에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가자들에게 ‘법정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성별과 피고인이 제시한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구성한 6가지 종류의 시나리오 중 하나에 무선할당되었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유죄확률 판단, 처벌 강도 판단, 양형 판단, 책임 판단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나이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후 설문이 종료되었다. 연구 전반에 관한 설명문과 연구 참가 동의서 작성을 포함하여 응답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시나리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대법원 판례(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를 참고하였고,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A4 1장 분량으로 제시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월세 집을 찾고 있던 피고인은 집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위해 피무고인과 만나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이후 피무고인과 함께 해당 집을 보러 간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정황으로는 피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무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피무고인은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시나리오에는 사건에 관한 객관적 사실만을 최대한 명시한 사건 내용 외에도 검사 및 변호인 측 주장이 함께 제시되었다. 피고인과 피무고인의 성별, 피고인이 제시한 형사합의금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측정 도구

피고인의 처벌판단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은 유무죄 판단과 유죄확률 판단, 처벌 강도 판단, 양형 판단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유무죄 판단의 경우,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판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로 응답하게 하였다.

둘째, 유죄확률 판단의 경우,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일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100%까지)”라는 문항에 대하여 0%에서 100%까지 5%씩 나누어 21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0=0%, 20=100%).

셋째, 처벌 강도 판단의 경우, 피고인을 얼마나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한다

면, 얼마나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7점 Likert 척도(1=매우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 7=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넷째, 양형 판단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판단을 내린 연구 참가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몇 년의 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이하로 기간을 적어주십시오.”라는 문항에 대하여 연과 개월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 참가자들에게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 판단

피고인이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7점 Likert 척도(1=전혀 책임이 없다, 7=매우 책임이 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가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의 액수에 따라 무고 사건의 유무죄 판단 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2회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피고

인의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중, 양형 판단의 경우, 연과 개월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 참가자는 총 406명으로, 남성은 203명(50%), 여성은 203명(50%)이었다. 평균 연령은 39.14세였으며(SD=10.902), 20대와 30대는 각각 102명(25.1%), 40대와 50대는 각각 101명(24.9%)이었다.

연구 참가자 성별,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른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중, 양형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가 보고한 양형 기간의 최솟값은 1개월이었으며, 최댓값은 120개월(10년)이었다.

유무죄 판단

피고인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유무죄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 성별($\chi^2(1, 408)=4.137$, $p=.042$)에 따라 유무죄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은 남성 피고인보다 여성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

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1, 408)=.718$, $p=.698$).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유죄확률 판단

피고인의 유죄확률에 대하여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0~100% 사이로 21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0=0%, 20=100%).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F(2, 394)=.106$, $p=.900$),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96)=16.861$, $p<.001$).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피고인,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피고인의 유죄확률이 더욱 높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피고인이 동성일 경우, 유죄일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였는데, 그 차이는 남성 참가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보다 남성 피고인의 유죄확률은 더욱 낮게, 여성 피고인의 유죄확률은 더욱 높게 판단하였다.

처벌 강도 판단

피고인의 처벌 강도에 대하여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가자 성별,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른 종속변인의 기술통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M(SD)
유죄확률 판단	참가자 성별	남성 42.00%(5.459)
		여성 37.10%(4.776)
	피고인 성별	남성 37.05%(4.867)
		여성 42.05%(5.376)
	형사합의금 액수	거액 37.85%(5.048)
		소액 40.15%(5.109)
	미제시	40.65%(5.298)
	참가자 성별	남성 3.48(2.156)
		여성 2.80(1.766)
처벌 강도 판단	피고인 성별	남성 3.04(1.907)
		여성 3.24(2.083)
	형사합의금 액수	거액 3.14(1.989)
		소액 3.08(1.951)
	미제시	3.20(2.062)
	참가자 성별	남성 24.92(28.728)
		여성 16.66(20.869)
양형 판단	피고인 성별	남성 19.07(24.277)
		여성 22.50(26.453)
	형사합의금 액수	거액 21.79(28.355)
		소액 21.31(23.704)
	미제시	19.27(24.053)
	참가자 성별	남성 3.64(1.966)
		여성 3.15(1.631)
책임 판단	피고인 성별	남성 3.25(1.747)
		여성 3.54(1.886)
	형사합의금 액수	거액 3.48(1.787)
		소액 3.29(1.842)
	미제시	3.41(1.842)

표 2. 피고인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른 유무죄 빈도(%) 차이

변인	유무죄 판단				
	무죄	유죄	X ²	p	
피고인 성별	남성	159(39.2%)	44(10.8%)	4.137*	.042
	여성	141(34.7%)	62(15.3%)		
형사합의금 액수	거액	102(25.1%)	33(8.1%)		
	소액	97(23.9%)	39(9.6%)		
	미제시	101(24.9%)	34(8.4%)		

* p<.05

표 3. 유죄확률 판단에 대한 연구 참가자 성별,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

변인	df	F	η^2	p
참가자 성별	1	3.713	.009	.055
피고인 성별	1	3.960*	.010	.047
형사합의금 액수	2	.491	.002	.612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2	16.681***	.041	<.001
참가자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199	.001	.819
피고인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828	.004	.438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106	.001	.900
오차		394		

* p<.05, *** p<.001

표 4. 유죄확률 판단에 대한 피고인 성별의 추정 주변 평균

피고인	성별	주변 평균	
		참가자	M
남성	남성	34.300	.502
	여성	39.755	.499
여성	남성	49.560	.499
	여성	34.460	.502

분석 결과,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F(2, 396)=.506, p=.603$),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96)=8.456, p=.004$).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피고인을,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 피고인보다 동성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판단을 적용하였으며, 그 차이는 남성 참가자들에 게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남성 참가자들은

표 5. 처벌 강도 판단에 대한 연구 참가자 성별,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

변인	df	F	η^2	p
참가자 성별	1	11.882**	.029	.001
피고인 성별	1	.951	.002	.330
형사합의금 액수	2	.115	.001	.892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2	8.456**	.021	.004
참가자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413	.002	.662
피고인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390	.002	.677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506	.003	.603
오차	394			

** p<.01

표 6. 처벌 강도 판단에 대한 연구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의 추정 주변 평균

성별		M	SD
피고인	참가자		
남성	남성	3.095	.196
	여성	2.990	.195
여성	남성	3.853	.195
	여성	2.613	.196

표 7. 양형 판단에 대한 연구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의 추정 주변 평균

성별		M	SD
피고인	참가자		
남성	남성	20.992	2.509
	여성	17.167	2.496
여성	남성	28.794	2.496
	여성	16.120	2.509

표 8. 양형 판단에 대한 연구 참가자 성별,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

변인	df	F	η^2	p
참가자 성별	1	10.866**	.027	.001
피고인 성별	1	1.821	.005	.107
형사합의금 액수	2	.392	.002	.676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2	3.126	.008	.078
참가자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063	.000	.939
피고인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396	.002	.673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031	.000	.970
오차	394			

** p<.01

여성 참가자들보다 남성 피고인에게 더욱 가벼운 처벌을, 여성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양형 판단

피고인의 양형에 대하여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피고인의 양형을 연과 개월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이를 개월 수로 환산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삼원상호작용 효과($F(2, 396) = .031, p=.970$)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 참가자들은 남성 피고인($M=20.992, SD=2.509$)보다 여성 피고인($M=28.794, SD=2.496$)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부과하였고, 여성 참가자들은 여성 피고인($M=16.120, SD=2.509$)보다 남성 피고인($M=17.167, SD=2.496$)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연구 참가자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나 ($F(1, 396)=11.882, p=.001$) 피고인 성별과 무

관하게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보다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부과하였다.

책임 판단

장간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대하여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F(2, 396)=.682, p=.506$),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표 10. 책임 판단에 대한 연구 참가자 성별 × 피고인 성별의 추정 주변 평균

성별		<i>M</i>	<i>SD</i>
피고인	참가자		
남성	남성	3.155	.177
	여성	3.343	.176
여성	남성	4.118	.176
	여성	2.949	.177

표 9. 책임 판단에 대한 연구 참가자 성별,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의 상호작용 효과

변인	<i>df</i>	<i>F</i>	η^2	<i>p</i>
참가자 성별	1	7.715**	.019	.006
피고인 성별	1	2.604	.007	.107
형사합의금 액수	2	.361	.002	.697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2	14.788***	.036	<.001
참가자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127	.001	.881
피고인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1.991	.010	.138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x 형사합의금 액수	2	.682	.003	.506
오차		394		

** $p<.01$, ***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96)=14.788, p<0.001$).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피고인이,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피고인이 무고 사건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 피고인보다 동성 피고인에게 관대한 책임 판단을 적용하였으며, 그 차이는 남성 참가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보다 남성 피고인은 무고 사건에 대하여 더 작은 책임이 있으나, 여성 피고인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논 의

성폭력 범죄의 증가세에 대한 우려는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국가적 선포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폭력 무고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 기능을 교란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행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를 성폭력 범죄에 벼금가게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확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피고인보다 여성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비율이 더욱 높았다. 연구 참가자들이 남성 피고인보다 여성 피고인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악녀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녀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남성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ishop & Frazier, 1984). 본 연구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금전적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 성 역할 기준에 어긋나며, 남성을 성적 관계로 유혹한 후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강간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강간 무고 사건이 주로 ‘꽃뱀’인 여성의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남성을 악의적으로 허위고소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실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둘째, 양형 판단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 대하여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 피고인보다 동성 피고인에게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가자들이 동성 피고인에게 유사성을 지각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개인은 자신과 동일한 성별이나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Sacco, Scheu, Ryan & Schmitt, 2003). 그러나 이성 피고인과 동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의 차이는 여성 참가자들보다 남성 참가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꽃뱀’의 악의적인 허

위신고로 강간 무고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허민숙, 2016).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꽃뱀’은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상과 거리가 멀고, 남성을 성적 관계로 유혹한 후 금전상의 이익을 갈취하는 여성이다. 혐오가 한 사회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유발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Rozin, Lowery, Imada & Haidt, 1999),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현대 사회에서 여성혐오 표현은 지배 집단인 남성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수연 등, 2018). 여성혐오 표현은 ‘김치녀’와 ‘개념녀’와 같이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서 비롯된 위계적인 젠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내포된 편견은 기정사실화되어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여성상에 어긋나는 여성에 대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여성”이라는 담론이 통용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김수아, 2015). 따라서 여성 피해자의 경우, ‘꽃뱀’인 ‘가짜’ 피해자와 ‘꽃뱀’이 아닌 ‘진짜’ 피해자로 구분되며, 가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중, 남성이 여성보다 온라인 상에 퍼져있는 남성혐오 표현은 불쾌하고, 불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반면 여성혐오 표현은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성나경, 성현준, 임광현, 김성현, 김성희, 김사라, 이수정, 2019), 남성 참가자들은 강간 무고 사건을 접했을 때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꽃뱀’을 연상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참가자들은 남성 피고인보다 여성 피고인의 형사합의 요구를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인식하고, 무고 가능성은 더 높이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른 편향이 실제하더라도 본 연구의 시나리오만으로는 이를 측정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참가자마다 거액 또는 소액이라고 판단하는 형사합의금 액수의 기준이 존재할 것이다. 제시된 형사합의금의 액수는 연구자의 주관적·자의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8천만 원과 2백만 원은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남에도 연구 참가자들이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과도하거나 다소 부족한 것, 또는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을 산출할 경우, 범죄행위의 불법성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닌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외생변인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들의 직업이나 교육 수준, 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형사합의금이 증가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연봉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중앙일보, 2018). 만약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므로(박혜경, 2015), 사회경제적 지위 단독으로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범죄 전형성 또는 고의성 귀인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병철, 김혜숙, 2018).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사건 판단이 이루어져 현실에서의 역동적인 법적 공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는데, 실제 형사 사건을 판단하는 것과 연구에서 상정하는 가상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판단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서진, 2020). 연구 참가자들은 가상의 실험 상황과 실제 상황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재판상황과 유사하게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Hall & Player, 2008). 또한, 연구 참가자들은 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하였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책임을 갖고, 인지적 노력을 들이게 되므로(Salerno & Diamond, 2010), 공정한 판단에 이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피고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판단자는 다양한 형태의 편향과 휴리스틱의 영향으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이 있다(이종엽, 2020). 강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진짜’ 피해자가 취했을 행동에 대하여 규범화되고 고정된 피해자상을 상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만약 피해자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김종일, 2020).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출되는 것인 만큼 강간 무고 사건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강간에 대한 인식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류화진, 2020).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강간 무고 사건을 이해하는 데 단편적인 해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중 미제시 조건의 경우,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해당 조건의 시나리오를 읽은 연구 참가자들은 다른 조건의 시나리오를 읽은 연구 참가자들과 달리 형사합의금이 아닌 피고인 성별과 같은 변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만으로는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형사합의금 액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시나리오와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액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의 내용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무고죄의 실행행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시나리오의 내용은 피고인의 신고 사실

이 허위일 가능성을 긍정할 요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무고죄 성립을 긍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할 수는 없다. 이는 금액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외에도 거액과 소액의 형사합의금이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아닌 강간 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다움’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져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간 사건 판단에 성차 효과가 보고된다는 점과 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된 점은 연구 참가자들이 형사합의금이 아닌 성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범죄에 대한 평가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후 평가라는 점에서(류화진, 2020), 강간 이전 시점이 아닌 강간 이후 시점에 존재한 피고인과 피무고인의 행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강간 사건의 무죄판결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 수사를 중단토록 한 개정 수사매뉴얼에 따른 것이었으나, 피고인의 무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로 작용하여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무고 원 사건의 판결은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는 부적절하며,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피해자의 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류화진, 2020; 허민숙, 2016).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강제추행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던 배심원들이 채택한 증거 중 하나로 피무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을 들었던 점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6 선고, 2017고합229 판결). 이에

무고 원사건의 판결 제시 여부와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 등의 처분 유형이 무고 인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강간 무고 사건을 판단하는 데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미치는 영향을 초보적으로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판단자는 범죄 사건을 판단하는 데 복잡한 인지적 사고 과정을 거치므로, 이지혜(2013)가 제안한 것과 같이 판단자의 양형 도출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실제 강간 무고 사건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한 바를 재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가 다른 유형의 범죄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는 다른 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보다 피해자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진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장다혜, 2012),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없어 실제로 이러한 인식이 통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로(조은경, 박지선, 2020), 성범죄 사건과 비(非)성범죄 사건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특성이 성범죄 사건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대인 범죄라는 맥락에서 폭행 사건과 같은 비(非)성범죄 사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성 간 강간 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범준(2007)은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이 성 간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 판단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이를 암시하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자의 고정관념이나 혐오 감정에 영향을 받아 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동성 간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이성 간 성폭력 사건보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배심원의 편견을 선동할 수 있는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류병관, 2016).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무고인의 성별이 동성인 경우,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심각성과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으나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추후 강간 무고 사건에 관한 인식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강간 사건과 마찬가지로 강간 무고 사건에서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나 배심원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 고유한 가치관과 고정관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배심원은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는 만큼 강간 사건이나 강간 무고 사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이에 관하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큰 차이가 존재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지현(2018)은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심원 후보자에게 사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선입견을 교정하여 편향된 판단을 지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홍영기(2010) 또한 배심원들에게 이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리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배심원에게 국가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복수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며, 이를 위하여 객관적·중립적 판단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배심원들이 외부의 영향이나 선입견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심원을 교육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강간 무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이를 무고로 인지하여 수사가 착수된다. 개정 수사 매뉴얼이 발표된 이후 무고로 인지되는 성폭력 사건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기 전에 무고 수사가 개시되어 피해자가 잘못된 혐의를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무고죄의 유죄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왜곡된 통념은 강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사·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성이 있다. 수사에 미온적·불친절한 태도를 드러내거나 협의를 종용할 수 있고, 강

간 피해자에게 성폭력 통념에 기반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Fishman & Clifford, 1995).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지식 전달과 집단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폭력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김종구, 2016), 형사사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양 성평등적 성 관념을 고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종구(2016)가 제안한 것처럼 신임 수사관과 일선에 근무 중인 수사관, 일반인과 수사관 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교육 내용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문봉 (2017).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무고사건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경화 (2012).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죄 적용 요인 분석: 검찰 수사과정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인숙, 이건정, 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 기광도 (2015).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 성폭력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3(2), 203-230.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57-73.
- 김보경, 김범준, 최종안 (2020). 판단자의 강간 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법, 11(3), 309-327.
- 김성돈 (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 (I): 형사사법체계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폐미니즘 연구, 15(2), 279-317.
- 김예람 (2008). 경찰의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도와 통념으로 인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구, 송봉규 (2018). 강간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8(0), 115-152.
- 김종구 (2016). 강간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일 (2020).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다움'에 관한 검토 - 2018고합75 판결과 2018노2354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4), 139-160.
- 김지현 (2018). 배심원의 성별과 피해아동의 연령이 성범죄 가해자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병관 (2016). 미국 형사절차상 동성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논의. 비교형사법연구, 18(1), 295-315.
- 류화진 (2020).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고죄 판단의 문제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3(1), 493-521.

- 문현경 (2018. 12. 19). 100만원, 2000만원...비슷한 성추행에 합의금 20배 차이 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220472>에서 검색.
- 박미랑 (2017). 법원 조직 특성에 따른 정의?-살인미수 양형선고에 있어서 법원 조직 특성의 영향력 연구-. 한국범죄학, 11(1), 169-197.
- 박미랑, 이민식 (2013). 특집: 한국사회의 강력 범죄와 형사정책적 대응; 절도범죄의 양형에 있어 법적 요소와 법외적 요소의 영향. 형사정책, 25(1), 35-57.
- 박은정 (2019).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혜경 (2015).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법, 6(1), 53-69.
- 서은경 (2015). 한국 여성범죄자의 생애단계별 경험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나경, 성현준, 임광현, 김성현, 김성희, 김사라, 이수정 (2019). 대학생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 태도 측정 -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3), 243-261.
- 신선미, 정태연 (2005). 성 상품화에 대한 인식: 상품화의 유형, 대상자 및 평가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603-617.
- 윤덕경, 김정혜, 천재영, 김영미 (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서진 (2020). 범죄 심각성과 자백 여부에 따른 법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및 양형판단: 법과학적 증거 평가 편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윤지소, 장혜경, 김수아 (201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예림, 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75-97.
- 이정원, 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부부강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47-73.
- 이종엽 (2020).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사법정책연구원.
- 이종인 (2007). 강간폭로, 순결, 결혼: 재미한 인여성들의 사유(思惟). 한국문화인류학, 40(2), 49-91.
-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3.
- 이지혜 (2013).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다혜 (2013). 피해자 경험을 통해 본 성폭력 형사합의 관행. 젠더법학, 4(2), 143-161.
- 장다혜 (2012).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경 (2017). 성폭력 피해 여성의 무고피소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찬영, 김현정, 김태경, 박상희 (2020).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식: 주체성과

- 판단자 성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167-194.
- 조병철, 김혜숙 (2018).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 범법자 소속 집단에 대한 지각이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1), 1-31.
- 조은경, 박지선 (2020).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의 차이: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1), 45-66.
- 하지환 (2016). 형사합의의 개념과 문제점 고찰. *법학논총*, 36(3), 301-329.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허민숙 (2018).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한국여성학*, 34(4), 69-97.
- 허민숙 (201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32(2), 1-29.
- 홍영기 (2010). 일반인의 범죄인식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 특히 배심재판을 대상으로. *고려법학*, 0(57), 25-57.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Albonetti, C. A. (1991). An Integration of Theories to Explain Judicial Discretion. *Social Problems*, 38(2), 247-266.
- Anderson, C. A. & Anderson, K. B. (2008). Men who target women: Specificity of target, generality of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4, 605-622.
- Balasubramaniam, B. & Park, G. R. (2003). Sexual hallucinations during and after sedation and anaesthesia. *Anaesthesia*, 58, 549-553.
- Bishop, D. M. & Frazier, C. E. (1984). The Effects of Gender on Charge Reduc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25(3), 385-396.
- Bryden, D. P. & Lengnick, S. (1997). Rap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7(4), 1194-1384.
- Carroll, J. E. (1997). Images of Women and Capital Sentencing Among Female Offenders: Exploring the Outer Limits of the Eighth Amendment and Articulated Theories of Justice. *Texas Law Review*, 75(6), 1413-1453.
- Chapleau, K. M., Oswald, D. L. & Russell, B. L. (2008). Male rape myths: The role of gender, violence, and sex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5), 600-615.
- Daly, K. & Bordt, R. L. (1995). Sex effects and sentencing: an analysis of the statistical literature. *Justice Quarterly*, 12(1), 143-177.
- Denno, D. W. (1994). Gender, Crime, and the Criminal Law Defense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85(1), 80-180.
- De Zutter, A. W. E. A., Horselenberg, R. & van Koppen, P. J. (2018). Motives for Filing a False Allegation of Rap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7(2), 457-464.
- Fishman, C. S. (1994). Consent, Credibility, and the Constitution: Evidence Relating to a Sex Offense Complainant's Past Sexual Behavior.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44, 709.
- Goulette, N., Wooldredge, J., Frank, J. & Travis, III. L. (2015). From Initial Appearance to Sentencing: Do Female Defendants Experience Disparate Treatment? *Journal of Criminal*

- Justice*, 43(5), 406-417.
- Hall, L. J. & Player, E. (2008). Will the introduction of an emotional context affect fingerpri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81(1-3), 36-39.
- Hancock, K. P., Policastro, C., Crittenden, C. A., & Garland, T. S. (2021). Major Blame: Examining Male Rape Myth Acceptance across College Majo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32(1), 108-125.
- Huitema, A. & Vanwesenbeeck, I. (2016). Attitudes of Dutch citizens towards male victims of sexual coercion by a female perpetrator.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22(3), 308-322.
- Kanin, E. J. (1994). False rape allegation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3, 81-92.
- Lu, H., Liang, B. & Liu, S. (2013). Serious Violent Offenses and Sentencing Decisions in China-Are There Any Gender Disparities?.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8(3), 159-177.
- Luke, K. P. (2008). Are girls really becoming more violent: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23, 38 - 50.
- Maurer, T. W. & Robinson, D. W. (2008). Effects of attire, alcohol,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date rape. *Sex Roles*, 58, 423-434.
- Ministry of Justice (2010). Providing anonymity to those accused of rape: An assessment of evidence. UK Ministry of Justice Research Series 20/10.
- Moulds, E. R. (1978). Chivalry and Paternalism: Disparities of Treat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ester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43(5), 406-417.
- Ott-Holland, C. J., Huang, J. L., Ryan, A. M., Elizondo, F. & Wadlington, P. L. (2014). The effects of culture and gender on perceived self-other similarity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3, 13-21.
- Rozin, P., Lowery, L., Imada, S., & Haidt, J. (1999). The CAD triad hypothesis: A mapping between three moral emotions (contempt, anger, disgust) and three moral codes (community, autonomy, div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574-586.
- Ryon, S. B. (2013). Gender as social threat: A study of offender sex, situational factors, gender dynamics and social contro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1(6), 426-437.
- Sacco, J. M., Scheu, C. R., Ryan, A. M. & Schmitt, N. (2003). An Investigation of Race and Sex Similarity Effects in Interviews: A Multilevel Approach to Relational Demograph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52-865.
- Salerno, J. M. & Diamond, S. S. (2010). The promise of a cognitive perspective on jury delibera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7(2), 174-179.
- Saunders, C. L. (2012). The truth, the half-truth and nothing like the truth.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2, 1152-1171.
- Spohn, C., White, C. & Tellis, K. (2014). Unfounding Sexual Assault: Examining the Decision to Unfound and Identifying False Reports. *Law and Society Review*, 48(1), 161-192.

- Steffensmeier, D., Ulmer, J. & Kramer, J. (1998). The interaction of race, gender, and age in criminal sentencing: The punishment cost of being young, black, and male. *Criminology*, 36(4), 763-798.
- Turchik, J. A., & Edwards, K. M. (2012). Myths about male rap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3(2), 211.
- Winters, G. M., Collins, C. M., Kaylor, L. E. & Jeglic, E. L. (2020). The Impact of Defendant Gender and Attractiveness on Juror Decision-Making in a Sexual Offense Case. *Deviant Behavior*, 1-18.

1 차원고접수 : 2021. 09. 27.

심사통과접수 : 2021. 10. 21.

최종원고접수 : 2021. 11. 12.

The Effect of Gender of Mock Jurors and Defendant and Criminal Settlement on a False rape allegation judgement

Yujin Kim

Minchi Kim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gender and amount of criminal settlement on punitiv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judgment in a false rape allegation ca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06 adult men and women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six experimental con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 and the gender of the defendant in the punitiv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judgment except sentencing judgment. In other words, participants applied heavier punishment and sentencing judgments to the defendants of the opposite gender, while lighter punishment and sentencing judgments were applied to the defendants of the same gender. However, the amount of the criminal settle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ll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examined how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the gender of the defendant and the amount of the criminal settlement affect the judgment of the false allegation of rape case which has not yet been fully discussed in Korea.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see how the amount of criminal settlement, which has not been covered before, affects the percep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demand criminal settle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false rape allegation, gender, criminal settlement, amount of settlement, punitive judgement, responsibility judgement